

구분	신청일자		신청방법
기관추천 특별공급	2025.03.31.(월)	09:00 ~ 17: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부동산원 청약Home</li> <li>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앱(청약 Home)</li> </ul>

■ 특별공급 청약자격 안내

구분	내용	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(㉠~㉢)을 모두 갖춘 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㉠ 무주택세대구성원(제35조 제1항 제12호 제외)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 및 제45조(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)에 따라, 아래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(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</li> <li>㉡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[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]</li> </ul> </li> </ul>	
	추천대상자	입주자저축 구비여부
	국가유공자, 장애인	필요 없음
	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의사상자, 다문화가족, 대한민국체육공공자 북한이탈주민, 남북피해자	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구분	내용
추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유공자,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: 부산지방보훈청 복지와</li> <li>• 장애인 :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,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,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</li> <li>•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: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</li> <li>• 중소기업근로자 :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</li> <li>• 의사상자 :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과</li> <li>• 다문화가족 :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</li> <li>• 대한민국체육공공자 : 국민체육진흥공단</li> <li>• 북한이탈주민 :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소</li> <li>• 남북피해자 : 통일부 남북재단책임</li> </ul>

구분	내용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</li> <li>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•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, <b>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</b></li> <li>•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·층별·향별·속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. 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불가)</li> <li>•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•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구분	59A		59B		59C		59D		84A		84B		84C		84D		합계		
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
국가유공자	6	30	2	10	1	5	-	-	10	50	1	5	1	5	1	5	22	110	
장애인	부산광역시	8	40	2	10	3	15	1	5	3	15	-	-	-	-	-	-	17	85
	울산광역시	1	5	-	-	1	5	-	-	-	-	-	-	-	-	-	-	2	10
	경상남도	1	5	1	5	1	5	-	-	-	-	-	-	-	-	-	-	3	15
	소계	10	50	3	15	5	25	1	5	3	15	-	-	-	-	-	-	22	110
장기복무제대군인	2	10	1	5	-	-	-	-	2	10	-	-	-	-	-	-	-	5	25
10년 이상 복무군인	6	30	1	5	1	5	-	-	4	20	-	-	-	-	-	-	-	12	60
중소기업근로자	11	55	2	10	3	15	1	5	5	25	-	-	-	-	1	5	23	115	
의사상자	1	5	-	-	-	-	-	-	1	5	-	-	-	-	-	-	-	2	10
다문화가족	4	20	-	-	1	5	-	-	4	20	-	-	-	-	1	5	10	50	
대한민국체육공공자	1	5	-	-	-	-	-	-	1	5	-	-	-	-	-	-	-	2	10
북한이탈주민	1	5	-	-	-	-	-	-	1	5	-	-	-	-	-	-	-	2	10
남북피해자	1	5	-	-	-	-	-	-	1	5	-	-	-	-	-	-	-	2	10
합계	43	215	9	45	11	55	2	10	32	160	1	5	1	5	3	15	102	510	

구분	내용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대상자는 <b>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.</b> 단,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</li> <li>•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,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.</li> <li>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[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]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</li> <li>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‘10.2.23)이전에 “3자녀 우선공급” 및 “노부모부양 우선공급”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. 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</li> <li>• <b>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(www.applyhome.co.kr)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불가]</b></li> </ul>

\*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
\*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